

프랑스 식품 라벨링 규정

프랑스 식품 라벨링 규정은 Regulation (EU) No. 1169/2011과 프랑스 소비자법 R 112-1 이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음

Regulation (EU) No. 1169/2011는 2011년 10월 25일에 제정되어 프랑스에서는 2014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고, 예외적으로 영양분 함량 표시에 관한 조항들만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
식품 라벨링은 식품을 상업화하는 업체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, 동 업체가 EU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수입업체에게 있음

라벨링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미리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(Prepacked food product)에만 적용되는 표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

1. 공통 규정

- 라벨링 표시사항은 분명하고 명확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.
- 표기되어있는 정보들은 식품의 특성 (특히 본질, 제품이름, 특질, 성분, 양, 유효기간, 원산지 및 제조방법)에 관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함
- 모든 유사 식품들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특유의 장점으로 소개하면 안 됨
- 표시사항에 실제 소유하지 않은 효력이나 특성을 간주하면 안 됨
-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라벨링 표시사항은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함 (프랑스 소비자법R 112-6 조항)

2. 포장되어 상품화되는 식품 라벨링 규정

의무 표시사항

- 제품이름
 - 법적인 식품 리스트에 있는 이름으로 표시해야 함
 - 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통상의 이름이나 descriptive이름을 표시해야 함
 - 원산지가 EU 외 국가일 경우 동 국가에서 판매시 사용되는 제품이름 사용이 허용됨

- 제품이름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, 제품 이름 근처에 식품을 설명하는 추가정보가 표기되어야 함
- 물리적 상태가 표기되어야 함 (동 표시 부재 시 소비자의 오해가 우려될 경우. 예 : 냉동되었던 식품을 해동 후 판매)

○ 성분

- 포함된 성분 전부의 리스트를 표시해야 함
- 리스트에 앞서 “Ingrédient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제목을 표시해야 함
- 포함된 성분의 무게를 따라 큰 것에서부터 작으 것의 순서로 표시해야 함
- 성분 표시 제외 제품
 -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, 성분과 제품명이 동일하여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
 - 알코올 도수 1,2% 이상의 알코올 음료
 - 신선 과일 및 야채
 - 탄산수
 - 발효식초
 - 치즈, 버터, 우유 및 크림

○ 알레르기 유발 성분

-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그 외의 성분과는 구분되어야 함
- 특별한 글자체 (예 : 굵은 글씨, 이탤릭체) 나 색 글씨나 배경 사용 권장함
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할 때는 법적인 성분 리스트 (Regulation (EU) No. 1169/2011, Annex II) 에 있는 이름으로 표시해야 함
- Gluten (Gluten)
- Crustacés (Crustaceans)
- Oeufs (Eggs)
- Poissons (Fish)
- Arachides (Peanuts)
- Soja (Soybeans)
- Lait (Milk)
- Fruits à coques (Nuts)
- Céleri (Celery)
- Moutarde (Mustard)
- Graines de sésame (Sesame seeds)
- Anhydride sulfureux et sulfites (Sulphur dioxide and sulphites)
- Lupin (Lupin)
- Mollusques (Molluscs)

-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시 제외 제품
 - 알코올 도수 1,2% 이상인 알코올 음료
 - 포장의 최고 면적이 10cm² 이하일 경우
 - 신선 과일 및 야채
 - 탄산수
 - 발효식초
 - 치즈, 버터, 우유 및 크림

○ 일정 성분의 양

- 다음의 경우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사용된 일정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
 - 식품명에 성분이 기재되어있거나, 소비자가 일정의 성분을 일반적으로 제품 이름과 연관시킬 경우
 - 일정의 성분이 라벨링의 단어나 이미지로 강조되어 있을 경우
(예 : 초콜릿 크림)
 - 일정의 성분이 식품을 특징짓거나 이름이나 외관상 다른 식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
- 일정 성분의 양 표시는 식품명에 포함되거나 식품명의 성분 목록 근처에 표기되어야 함
- 성분의 양은 백분율로 표기되며, 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양을 가리킴

○ 순수량 (Net quantity)

○ 유효기간

- 상하기 쉬운 식품은 “A consommer jusqu’ au“ (Use by) 일 / 월 / 연도의 순으로 표시해야 함
- 그 외의 식품은 “A consommer de préférence avant“ (Best before) 일 / 월 / 연도의 순으로 표시해야 함
- 유효기간 표시 제외 제품은 다음과 같음
 - 신선 과일 및 야채
 - 와인
 - 알코올 도수 10% 이상인 알코올 음료
 - 식초
 - 설탕 및 설탕으로 제조된 당과

- 소금
 - 추잉검
 - 제빵 및 Pastry 제품 (통상적으로 제조 후 24시간 이내에 먹는 식품)
- **보관방법** (포장을 연 후 특별한 보관방법이 필요한 식품에만 해당)
- **제조회사 정보** (제조회사나 EU 내에 수입 업체 이름과 주소)
- **원산지**
 - 원산지 표시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음
 - 원산지 부재 시 소비자의 오해가 우려될 경우
 - 가금류, 돼지, 양 및 염소 고기 식품
 - 식품의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식품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, 동 성분의 원산지 또한 표시해야 함
- **생산 로트 (Production lot)**
 - 생산 공장과 로트 (lot)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해야 함
 - 다음 경우 생산 로트 표시 의무 제외
 -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일 / 월 / 연도의 순으로 표기되었을 경우
 - 일정의 농산물
 - 포장의 최고 면적이 10cm² 이하일 경우
 - 개별 포장의 아이스크림
- **사용방법** (사용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)
- **알코올 도수** (1,2%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)
- **영양 성분**
 - 영양분 함량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비교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
 - 영양분 함량 표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의무
 - 의무 표시 사항은 아래와 같음
 - Energy value
 - Fat
 - Saturates
 - Carbohydrate

- Sugars
- Protein
- Salt
- 선택 표시 가능 사항은 아래와 같음

- Mono-unsaturates
- Polyunsaturates
- Polyols
- Starch
- Fibre
- Vitamins and Minerals (표시가능 비타민과 미네랄 및 영양 기준치)
 - ✓ Vitamin A (μ g) 800
 - ✓ Vitamin D (μ g) 5
 - ✓ Vitamin E (mg) 12
 - ✓ Vitamin K (μ g) 75
 - ✓ Vitamin C (mg) 80
 - ✓ Thiamin (mg) 1,1
 - ✓ Riboflavin (mg) 1,4
 - ✓ Niacin (mg) 16
 - ✓ Vitamin B6 (mg) 1,4
 - ✓ Folic acid (μ g) 200
 - ✓ Vitamin B12 (μ g) 2,5
 - ✓ Biotin (μ g) 50
 - ✓ Pantothenic acid (mg) 6
 - ✓ Potassium (mg) 2 000
 - ✓ Chloride (mg) 800
 - ✓ Calcium (mg) 800
 - ✓ Phosphorus (mg) 700
 - ✓ Magnesium (mg) 375
 - ✓ Iron (mg) 14
 - ✓ Zinc (mg) 10
 - ✓ Copper (mg) 1
 - ✓ Manganese (mg) 2
 - ✓ Fluoride (mg) 3,5
 - ✓ Selenium(μ g) 55
 - ✓ Chromium (μ g) 40
 - ✓ Molybdenum (μ g) 50
 - ✓ Iodine (μ g) 150

- 영양 성분 표시 제외 제품

- 알코올 도수 1,2% 이상인 알코올 음료
- 포장의 최고 면적이 25cm² 이하일 경우
- 영양 보조 식품

- 미네랄 워터
- 커피
- 차
- 향신료
- 식초
- 소금
- 추잉검
- 효소식품
- 감미료

3. 라벨링 가이드 라인

- 라벨링 표시사항은 포장 위나 포장에 매달린 라벨에 명시해야 함
-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,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기해야 함
- 제품명, 순수량(Net quantity) 및 알코올 도수에 관한 표시는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명시해야 함
- 의무표시 사항들의 글자크기는 최소 1.2mm이어야 함
- 포장의 최고 면적이 80cm² 이하일 경우 글자크기는 최소 0.9mm이어야 함
- 표시사항은 단어 및 숫자로 표기되어야하며 그림기호나 심볼 (symbol)을 사용할 수 있음